

의안번호	제 23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

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0월 2일

#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234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0월 2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(광역)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·수탁 협약이 종료(2015.12.31.)됨에 따른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: 충청북도 (광역)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

나. 추진 계획

- 수탁기간 : 2016.1.1. ~ 2018.12.31.(3년간)
- 수탁기관 : 정신보건시설, 비영리법인, 학교법인
  - ※ 現 수탁기관 : 충북대학교 병원('13.5.15~'15.12.31)
- 수탁방법 : 공모 선정 또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협약
  - ※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 생략 가능(보건복지부 지침)
- 위탁주요사무
  -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기본 업무
  -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
  -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
  -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  -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
  - 충청북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연계지원
  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  - ※ 위탁 기본 계획 별첨

### 3. 참고 사항

#### 가. 現 충청북도 (광역)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

- 센터 설립 경과
  - 보건복지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공모 선정('12.12)
  - 도 위탁기관 공모('13.4) ※ 1개소 신청(충북대학교병원)
  -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('13.4)
  - 위·수탁 협약 체결('13.5)
- 수탁기관 : 충북대학교 병원
  - 현 위·수탁 기간 : '13.5.15 ~ '15.12.31
- 기본 운영비 : 768,800천원(국비50%, 도비50%)
  - 기준 :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기준(지침)
- 센터위치 :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1 (보덕빌딩 2층)
- 조직·인력 : 3개팀 15명 / 자문의(임상의) 1명
  - 센터장 : 김시경(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)
  - 3개팀 : 기획홍보팀, 정신건강증진팀, 자살예방위기 관리팀

#### 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정신보건법 제13조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등)제3항
-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기관·단체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)
- 2015 정신건강사업 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
#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추진 계획



보건복지국  
보건정책과

#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

정신질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, 자살예방사업 등 도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한 「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」 운영 위·수탁 협약기간이 '15.12.31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재협약 추진계획(안)임

## 1 관련 근거

-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의2
  -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
  - 위탁대상 사무 및 도의회 동의 규정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  - 기 민간위탁사무도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도의회 동의 조치

## 2 現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현황

- 수탁기간 : 2013. 5. 15 ~ 2015. 12. 31
- 수탁기관 : 충북대학교 병원(원장 : 조명찬)
- 위 치 :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1(보덕빌딩2층)
- 운 영 비 : 년768,800천원(국비50:도비50)
- 위탁사무
  -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  -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
  -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
  -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

-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등
-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
- 충청북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연계 지원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등

### 3 수탁기관 추진 일정

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10월 중

②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방침 수립 : 10월 중

- 위탁방법, 위탁기간,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
  - 현 수탁기관이 재운영 의사가 있는 경우 : 재협약 검토
    - ※ 1회에 한하여 공모없이 재계약 가능(보건복지부 지침)
  - 현 수탁기관이 재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: 공개모집

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추진 : 11월중

- 구성인원 : 6~9명정도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
- 
- 당연직(2명, 기획관리실장, 안전행정국장)
  - 기 타 : 정신보건심의원,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 등 위촉
- 

④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11월 중

### 4 행정 사항

- 위·수탁 협약 후 선정 된 수탁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

# 관계 법령 발췌

## 【정신보건법】

제13조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·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【정신보건법 시행령】

제3조의2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·단체) 법 제1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1. 정신보건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

## 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】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【2015 정신보건사업 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】

### ○ p45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·운영

- (설치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시·도지사)
- (설치기준) 광역 시·도별 1개소
- (운영형태 中 위탁형)

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(지역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기관·단체)에 근거 시·도지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정신보건시설,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

### ○ p51 사업수탁기관의 선정·계약

-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,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.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
- 위탁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함. 단, 계약사항 위반,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

### ○ p68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주요사업

- 자살예방사업,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,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, 정신건강증진사업, 중독관리사업, 1577-0199 정신건강핫라인 운영에 대한 연구 기획, 프로그램개발, 교육, 네트워킹 등